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38

발의연월일: 2020. 10. 15.

발 의 자:신정훈·김두관·권칠승

이성만 • 윤재갑 • 김상희

송영길 • 이병훈 • 고민정

민형배 · 송갑석 · 주철현

박홍근 · 김성환 · 윤영덕

이개호・조오섭・이동주

이규민 • 박영순 • 이상헌

안민석·김회재·소병훈

김승남 • 이해식 • 윤영찬

남인순 · 신영대 · 소병철

이용빈 · 김경만 · 이수진

김한정 · 한준호 · 이원욱

양향자 • 이형석 • 김수흥

서삼석 • 이용선 • 서동용

정태호 · 장경태 · 김원이

임호선 · 조정훈 · 박용진

고용진 · 이학영 · 서영교

의원(51인)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저탄소 전환, 디지털 융복합 기술혁신의 가속화, 에너지 시스템의 분산화 등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며 에너지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은 2030년까지 약 3경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기술격차는 약 4.5년으로 에너지 신기술을 통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며,에너지 신기술 개발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견인하기 위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의 핵심이기도 함.

이러한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구 플랫폼의 확보를 통한 기술혁신과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나, 기존의 대학들은 경직적 교육체계 등으로 인해 혁신모델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 도입하고,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도전적이고 고난이도 연구를 수행하며, 창의적 문제발굴 및 해결역량 강화 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함.

이를 위해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국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

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 공대를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나.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원은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사업계획 서 등을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1 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한국에너지공대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 마. 한국에너지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 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설립

- 제2조(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② 한국에너지공대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지원·조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3장 조직

- 제6조(임원)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인을 포함한 15 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⑤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⑦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7조(총장)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평의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 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4.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③ 평의원회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재무회계 등

- 제10조(사업연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시설·설비, 연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 ② 국가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대의계약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한다.
 -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 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 업무
-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 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 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기부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 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한국에너지공대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기금운용 수익금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 2. 대규모 교육시설·연구시설의 설치·운영
 -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학사 등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 ②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 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 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교원의 임면)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총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한다.
- ⑥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2조(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학위과정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교육·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4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문석사· 석사·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제25조(학생)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을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민법의 준용) 한국에너지공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 이 법 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 너지공대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속하였던모든 재산·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명의로 본다.

제3조(설립에 관한 특례) 한국에너지공대는「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